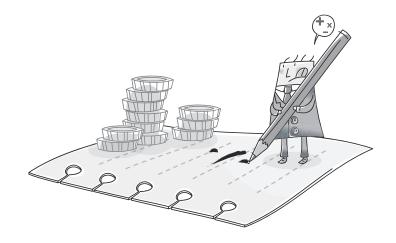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로자들의 소득을 두고 흔히 '유리지갑' 이라고 한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편한 과 세대상이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 · 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1년 총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나라를 대신해 돌려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때 혼동하기 쉬운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부양가족 공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라고 정하고 있으나,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로 돼 있 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호적 등본을 첨부해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부양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함께 조회하려면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 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일괄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내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 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해외 자녀 공제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교육비, 즉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비는 제외된다.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머니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고 아버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어머니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아버지는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모친을 부양하다 당해연도 중 사망했다 면 또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추가로 장례비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 을 수 있다.

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는다. 따라서 1년 납입 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10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혼인 및 이사비용에 대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총 2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우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본 인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내 연금저축을 중 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다. 무주택 근로자인 18세 이상 세대주 본인이 저축상품에 가입, 금액을 불입한 경우 저축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단 공제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못했으나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비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 마다 100 만원씩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 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 해택이 주어진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 또한 공제받은 수 있다. 단 1인당 연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다. 연말에 준비해야 할 증빙은 주민등록등본(혹은 호적등본), 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등의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의료비 지급 확인서, 수험료 등 교육비 영수증 등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인별 카드 사용액, 의료비지출액, 보험료 등 관련 내용을 제공하 고 있으므로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해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머니투데이